

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9. 2.

임실군의회 의장

### 1. 제정이유

- 임실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 2. 주요내용

- 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목적·명칭의 정의사항(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다른법규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 관련 공연·전시·강좌·행사 등 개최
  - 지역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
  - 전통문화사업 및 지역특색 문화사업 행사 지원 및 개최
- 라. 행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지원기준 및 절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3.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 나. 예산조치: 2015년 본예산 330,000천원 반영

다. 협의 등

- 1) 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 원안동의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7. 3. ~ 7. 23.)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 2) 비용추계서 : 붙임
- 3) 관련법령 발췌문 : 붙임

## 임실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여 임실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기반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생활문화예술동호회”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 문화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 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관련 공연·전시·강좌·행사 등 개최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3.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 사업
4. 전통문화사업 및 지역특색 문화사업 행사 지원 및 개최
5.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
6.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및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7. 군에서 제4조 제3항의 사업을 문화예술단체에 대행하는 사업

**제6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임실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 지원

○ 관련조문

- 임실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
- 임실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관내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2015년 기준 : 12개 단체)

나. 추계의 결과

- 연간예산액 : 330,000천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문화예술 관련 공연·전시·강좌·행사 등 지원 : 137,000천원
-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사업 : 61,000천원
- 전통문화사업(향교 등) 행사 지원 및 개최 : 34,000천원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 78,000천원
- 작은영화관 운영 등 영상사업 육성 : 20,000천원

### 3. 자원조달방안

- 도비 보조금 및 자체재원(군비)

### 4.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인숙

붙임 :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출		330,000	340,000	340,000	340,000	340,000	1,690,000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330,000	340,000	340,000	340,000	340,000	1,69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330,000	340,000	340,000	340,000	340,000	1,690,000
	도비	119,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599,000
	군비	211,000	220,000	220,000	220,000	220,000	1,091,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